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6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일부 면제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구정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문 신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5항 신설

： 무인민원창구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부 발급 수수료 면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전화: 02-3396-4783, FAX: 02-3396-8647, E-mail: aldlswl@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0. (생략)</p> <p>② 삭제(1997.1.18.)</p> <p>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u>〈신 설〉</u></p>	<p><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p>